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51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허종식・박지원・김태선
염태영・허성무・박 정
정일영・이훈기・이학영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2029년----------.